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10
------	-----

2007년 9월 4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2007년 8월 2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2007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가. 제안이유

-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대출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회원증 재발급 및 반납 연체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강습·강좌 참여시 징수하는 수강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첫째,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의 대출회원증은 종이에 인쇄된 바코드를 코팅하여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플라스틱 카드 및 RFID카드로 대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자료를 대출 받은 후 반납기한을 연체하여 반납한 이용자는 연체료 또는 대출정지를 택일하도록 하였으며 근본적으로는 대출도서의 미반납을 예방하여 장서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강습·강좌에 참여한 자가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 사고, 질병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의사표시만으로 반환을 해 주도록 반환기준을 완화하였음.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청수)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서관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서대출 카드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징수, 도서반납 연체에 대한 연체료부과,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등 도서관과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1조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도서관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변경한 것은 동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이 "제139조제2항"으로 수정 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것임.
- 안 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제1항의 내용에서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으로 수정한 것은 평생학습관의 자료 복사 및 출력 등의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제1항의 제4호는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신규발급 대비 약 26%의 재발급 사유가 발생되어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현재 종이에 인쇄된 바코드를 코팅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자료자동대출반납시스템 시범설치를 위한 RF카드(RFID Tag)로 전환하거나 플라스틱카드를 도입할 경우 분실로 인한 재발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규가입자에게는 대출카드를 무료로 발급한 후

본인의 부주의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플라스틱카드형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을, RF카드형은 성인 2,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초등학생 이하 1,000원을 부과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의2(연체료)를 신설하려는 것은 현행 대출시스템은 미회수 도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전화독촉, 이메일 발송, 문자전송, 독촉장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고, 자료를 연체한 일 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연체된 도서의 반납을 종용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한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 1일 책1권의 연체에 100원을 부과하도록 하되 연체료 부과 금액이 대출 자료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연체자에게는 연체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대출을 일시 정지 시키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로 인하여 도서대출의 미반납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서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의2는 현행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거주지 이전이나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던 수강료 등의 반환이 본인의 의사변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 수강료 반환 규정은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도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없어 민원 발생 빈도가 높고, 수강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부분을 정리하고, 도서 반납 연체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도서대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던 평생학습관을 포함하고, 수강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동 조례는 도서관 및 평생교육원의 자료복사 및 출력료를 1매당 30원으로 정하는 등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요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므로 복사료 등 일반적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대출카드 제작 원가는 얼마이며 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 답변 : 대출카드는 종류에 따라 1,000원과 2,000원의 원가가 소요되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